

충남 결혼이주민 가족의 현황 및 복지증진

문순영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서론

2007년 8월 현재 국내에 머무르는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이웃 100명 중 2명이 외국인인 시대가 되었다. 한국이란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국적의 이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생활과 삶의 공간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인의 배우자로 외국인을 보는 것이 전혀 낯선 광경이 아니게 되었다.

2005년에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 건수의 13.6%에 이르렀다. 국제결혼이 국내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에 5.2%이었던 것에서 2004년에 11.4%로 증가하여 2년 사이 배가하였고, 2005년에는 혼인자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두드러지게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2년도에 11,017건(전체 결혼 건수의 3.6%)이었던 것에서 2004년도에 25,594건(전체 결혼 건수의 8.2%)으로 두 배 이상증가 하였고, 2005년에는 31,180명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9.9%를 차지하여 한국 내 국제결혼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하여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¹⁾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유형은 농촌 지역으로 가면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2005년에 혼인한 남성 농림어업종사자 중 외국 여성과 혼인한 비율은 전체 국제결혼의 35.9%로 농림어업종사자 혼인의 3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이었다(통계청).

1) 출처 : 충청남도, 「2007 충남여성백서」
충청남도, 「2006 충청남도 도정백서」

이들 여성 결혼 이주민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 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자국에서 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정착한 농촌지역이 노동환경과 생활조건이 열악하여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 역시 대체로 빈곤층에 속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결혼 여성이주민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나는 혼혈아가 2006년 전체 신생아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한다면 향후 15년 후인 2020년에는 32%가 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농촌의 면지역 초등학교를 조사해 보면 한반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혼혈이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혼혈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전정애·표갑수, 2007:96).

이와 같이 국제결혼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미비하였다. 그나마 정부가 이들 국제결혼 가정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체험인데, 이마저도 산발적이면서도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많은 국제결혼 가정과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을 극복하며 갈등과 사회 적응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 이혼이나 단독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과 같은 사회 현상을 고려하면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함의는 매우 크다. 또한 향후 이들 2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로서 생산가능 인구에 속하고,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인적자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이들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로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할 과제들을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충청남도의 국제결혼 현황

충청남도의 국제결혼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전국 국제결혼의 증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에 충남의 국제결혼이 전국 국제결혼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던 것에서 2005년에는 27.1%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충남 자체의 국제결혼이 총 혼인건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4.2%에서 2004년에 10.3%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13.1%를 차지하여, 충남 혼인자 100명 중 13명이 국제결혼 가정인 것으로 나타나 충남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결혼 유형의 하나로 국제결혼이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충남의 국제결혼 추이

연도	전국			충남			충남국제결혼 /전국국제결혼 (%)
	총혼인 건수	국제결혼		총혼인 건수	국제결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1	320,063	15,234	4.8	11,113	466	4.2	3.06
2002	306,573	15,913	5.2	10,421	534	5.1	3.36
2003	304,932	25,658	8.4	10,551	822	7.8	3.20
2004	310,944	35,447	11.4	11,418	1,173	10.3	3.31
2005	316,375	43,121	13.6	12,108	1,590	13.1	3.6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www.kosis.nso.go.kr)

충남의 국제결혼을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국제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이후 모두 86%를 넘고,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결혼은 15%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국제결혼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65.7%에서 2005년 72.3%로 증가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충남이 약 13%~22% 정도 높다. 이는 충남이 농촌지역이 많아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표 2〉 충남의 국제결혼 유형 변화

연도	구분 총합	한국남성 +외국여성		한국여성 +외국남성		전국 비율 (한국남성+외국여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1	466	409	87.8	57	12.2	65.7
2002	534	481	90.1	53	9.1	69.2
2003	822	752	91.5	70	8.5	77.6
2004	1,173	1,027	87.6	146	12.4	72.2
2005	1,590	1,378	86.7	212	13.3	7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www.kosis.nso.go.kr)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출신 국가별로 구분하여 보면,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 총 1,514명 중에서 중국이 589명(38.9%), 베트남 347명(22.9%), 필리핀 255명(16.8%), 일본 179명(11.8%), 태국 51명(3.4%), 우즈베키스탄 20명(1.3%)로 나타나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표 3〉 참조). 이들을 거주 지역별로 분포를 보면, 면 지역이 1,001명(66.1%), 읍 지역이 339명(22.4%), 시 지역이 174명(11.5%)로 나타나 대 다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충남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신국가별 현황 (2005년말 기준)

합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연변	캄보디아	기타
1,514	589	347	255	179	51	20	17	11	11	34
100(%)	38.9	22.9	16.8	11.8	3.4	1.3	1.1	0.7	0.7	2.4

자료: 김종철, "충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현황 및 지원대책," 「아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현황과 정책 간담회」, 자료, 2006, p34

충남의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표 4〉에서 보여주듯이 30세까지가 41.5%, 31세~40세 41.2%, 41세~50세 15%, 50세 이상이 2.3%로 40세 이하가 총 82.7%로 젊은 여성들의 비율이 높다. 이들이 살고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읍이나 면의 농촌 지역인 것으로 염두에 두면, 충남의 농촌지역이 노령화되고 젊은이가 공동화되는 경향을 조금은 완화하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은 이들 이주여성들은 총 여성 인구의 0.15%로 큰 인구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적으로도 0.06%~0.45%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여군이 166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이 당진군 160명, 천안시 및 공주시가 각각 144명, 금산군이 130명, 서산시가 122명으로 비교적 많이 100명이 넘게 거주하는 지역인 것에 비하여 계룡시는 8명으로 이주 여성의 거주 비율이 아주 낮다.

〈표 4〉 충남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의 연령 분포(2005년 말)

(단위 : 명)

시군별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 인구 ¹⁾						여성총인구 ²⁾
	30세까지	31세~40세	41세~50세	50세 이상	계	비율(%) (/여성인구)	
30세까지	629 (41.5)	623 (41.2)	227 (15%)	35 (2.3%)	1,514 (100%)	0.15	981,283
천안시	51	66	23	1	141	0.06	255,870
공주시	65	52	24	3	144	0.22	64,757
보령시	23	25	4	1	53	0.1	53,598
아산시	32	33	13	1	79	0.08	102,573
서산시	35	63	20	4	122	0.16	74,489
논산시	45	44	24	2	115	0.17	67,575
계룡시	3	5	0	0	8	0.05	17,375
금산군	64	42	24	0	130	0.45	28,936
연기군	32	22	12	0	66	0.16	41,829
부여군	52	87	26	11	166	0.41	40,871
서천군	25	19	8	1	53	0.16	32,541
청양군	26	24	8	0	58	0.33	17,517
홍성군	34	44	11	5	94	0.20	45,959
예산군	16	32	6	3	68	0.15	45,461
태안군	16	32	6	3	57	0.18	31,859
당진군	94	46	18	2	160	0.27	60,073

자료: 1) 김종철, "충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현황 및 지원대책," 『아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현황과 정책 간담회』, 자료, 2006, p35 재구성

2)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복지계획』, 2006, p55

이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녀가 있는 가정이 64.9%이고, 이들 중 자녀 1인 가정이 30.2%, 자녀 2인 가정이 25.2%, 자녀 3인 가정이

7.6%, 자녀 4인 가정이 1.9%이었다. 2000년 한국의 출산율이 1.47이었던 것에서 2005년에 1.08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 국제결혼 가정은 이와는 달리 상당히 충남지역의 인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40세까지의 가임여성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30세 이하의 여성비율이 41.5%이므로 향후에 자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남 농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저지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충남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수 및 자녀의 학력별 분포

시군별	자녀수 분포						자녀의 학력별 분포					
	0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계 (가구)	취학전 (명)	초등학 교(명)	중재 (명)	고재 (명)	대재이 상(명)	계(명)
계	531	457	382	115	29	1,514	1,080	413	33	30	57	1,613
비율	35.1	30.2	25.2	7.6	1.9	100.0	63.1	25.6	2.0	1.9	3.5	100.0
천안시	43	40	39	13	6	141	78	23	5	2	4	112
공주시	71	43	22	7	1	144	78	23	5	2	4	112
보령시	22	13	16	2	·	53	31	16	·	·	4	51
아산시	30	28	20	1	·	79	46	21	·	2	2	71
서산시	22	40	39	19	2	122	114	55	4	6	4	183
논산시	42	37	19	15	2	115	82	31	4	6	5	128
계룡시	3	3	2	·	·	8	3	3	1	·	·	7
금산군	38	40	37	8	7	130	114	47	2	1	1	165
연기군	26	20	18	2	·	66	39	20	1	1	1	62
부여군	61	44	48	10	3	166	101	58	1	5	17	182
서천군	20	17	11	3	2	53	40	8	6	·	2	56
청양군	9	19	19	9	2	58	62	26	2	2	1	93
홍성군	34	27	24	7	2	94	82	17	·	·	5	104
예산군	23	27	15	3	·	68	53	12	1	·	·	66
태안군	15	16	22	3	1	57	52	19	·	·	2	73
당진군	72	43	31	13	1	160	105	34	1	3	5	148

자료 : 김종철, "충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현황 및 지원대책," 「아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현황과 정책 간담회」자료, 2006, pp.36-37

그리고 이들 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는, 취학 전 자녀가 1,080명 6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초등학생이 413명으로 25.6%, 중학교 재학생이 33명으로 2.0%, 고등학교 재학생이

30명으로 1.9%, 대학교 재학생이 57명으로 3.5%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자녀수가 많은 지역은 서산시 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여군이 182명, 금산군이 165명, 당진군이 148명, 논산시가 128명, 천안시와 공주시가 각각 112명, 홍성군이 104명으로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과 자녀들의 수 및 분포를 종합하여 볼 때, 충남의 농촌 지역에서 이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핵심적 구성원이 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성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키는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지원과 이들 이주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적인 풍요와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택하여 온 이주 여성들이 농촌지역에 장기적으로 자리 매김 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Ⅲ.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생활 적응에서 겪는 문제

우리 사회에 정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이들에 대한 복지 욕구를 조사한 연구들은 극히 소수이다. 더구나 충남의 경우에는 이들 가정의 거주 및 인구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간단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서 이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 따라서 충남 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복지욕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제결혼 가정 사례를 다룬 몇 편의 연구논문, 그리고 국제결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상담 자료나 홍보 및 세미나 발표 자료,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국제결혼 여성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욕구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강원도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조사한 강유진(1999)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여성 이주민들이 '생활습성, 언어 장벽 등 문화적 차이' (29.9%), '고향에 대한 그리움' (27.7%), '남편과의 성격차이' (11.5%)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의 풍습에 관한 교육' (38.1%), '요리'

(29.9%), '기술교육' (27.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전남 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조사한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적 지원 사항을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 (11%), '전통문화나 요리강습의 요구' (11%), '언어교육' (11%), '영주권 및 선거권 인정' (11%)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동사무소나 시청 등으로부터 생활혜택에 관한 정보제공' (5%), '지역신문배달' (5%),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5%), '한국문화안내' (5%)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적은 사례수와 조사 대상 인원 중 21%가 응답을 하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국제 결혼한 여성들에게 절실한 사회적 지원이 어떤 것들인지는 엿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 외에도 여성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 워크숍이나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통하여도 이들 여성들의 욕구를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숍'(2003)에서는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충격',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부족' 등이 국제결혼 여성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주관으로 열린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에서 이금연(2003)은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①언어습득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②가정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③사회시스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④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 기회의 어려움, ⑤사법권 및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⑥귀화시험의 어려움, ⑦문화적 갈등, ⑧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⑨기타 사설알선업자들의 여권 압류 및 감시 등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움(2004)에서는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성적학대와 인격모독', '경제적 빈곤의 문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국사회 적응문제', '임신·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몰이해(제3세계 여성들이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다)', '체류문제와 관련한 신분상의 불안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전국적 실태조사는 비교적 최근 1-2년간에 진행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적 많은 수의 국제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던 설동훈 외(2005)의 조사에서는 빈곤³⁾과 의료보장⁴⁾의 문제가

2) 전국적으로 1,082명의 국제결혼 배우자를 조사.

3)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었음.

4)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어떤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23.6%이었음.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소,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의료보장서비스 이용의 장벽 제거, 가정폭력의 경험, 불안정한 결혼 상태 등에서 기인하는 정신·심리적인 치료와 상담서비스,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동훈 외의 또 다른 연구(2006)에서는 외로움(22.3%), 문화차이(14.6%), 자녀문제(13.8%), 경제문제(12.1%), 언어문제(11.5%), 가족갈등(3.5%), 주위의 시선이나 태도 등을 의식하는 것(3.1%), 음식이나 기후(3.0%) 등이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결혼 이주민들이 실제로 체험한 정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한국어 교육'과 '취업교육·훈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다음으로 '컴퓨터·정보화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선(2007)의 연구는 비록 경기도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외국인 부인의 서비스 욕구로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절실히 요구되는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이, 다음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및 교육'과 같은 고용관련 서비스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동거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발표 자료들, 그리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제결혼 여성이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①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언어교육, ②인권침해(가정폭력 포함)해소, ③취업에 필요한 서비스(교육, 상담, 알선 등), ④문화 교육, ⑤빈곤해소, ⑥의료보장, ⑦임신 및 출산,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IV.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일제하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이 시작이었으며, 한국 전쟁 때 미군으로 대표되는 유엔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런 결혼은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여서 이들 결혼의 대상자였던 한국 여성과 자녀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어 만들어진 적은 없었다. 그 때문에 한국

인과 아시아인의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정부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서 단지 몇몇의 선구적인 NGO들이 이들의 긴급한 욕구를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전적으로 그들의 몫으로 방기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들 국제결혼 가정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몇 곳에 지나지 않는 NGO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들의 경험하는 차별이나 인권보호, 복지욕구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제3세계 여성 배우자에 대한 한국남편들의 횡포, 학대, 인권유린 등의 사례들이 외부로 보고되면서 국가 위상이 저하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출신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되었다. 더하여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가 이주 여성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었다. 이렇게 되자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결혼 이주민 여성의 한국어 교육 및 전통 문화체험,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원 등의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사업들로 이미 심각해지고 있는 결혼 이주민 가정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고, 정부 부처간의 중복적 사업 설정으로 예산의 낭비와 유관부처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2006년 4월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 대책은 '차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란 기본방향 아래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대통령자문민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 유관부서 모두가 참여하여 마련되었다

〈표 6〉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영역	정책 세부 내용 요약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②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③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④재외공관에 여성인권담당관 배치 검토 ⑤결혼비자 발급 서류 절차 표준화 및 사전 사중인터뷰 제도 도입 검토 ⑥외교 채널을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⑦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p>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p>	<p>①배우자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 여성의 의견청취, 사실여부확인 ②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③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요청 완화 - 시민단체 등의 사실 확인 등 ④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⑤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 1366 핫라인, 전용 쉼터 등 마련 ⑥무료법률 구조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p>
<p>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p>	<p>①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 On/Off Line 동시 구축 ②한국생활적응 및 정착지원 - 한국인 가정과 자매결연, 한국어 교육 및 교육방송지원 등</p>
<p>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p>	<p>①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 교육과정개선 ②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강화 -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생활 다언어 리플렛 작성, 이중 언어 학습지원 등 ③교사역량강화 ④집단따돌림 예방 ⑤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이용, 농어촌지역 멘토링 제도 도입</p>
<p>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p>	<p>①기초생활보장 및 건강증진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 모·부자복지법적용, 건강검진서비스 시범실시 및 무료진료지원 ②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출산도우미, 산전 후 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 등 ③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 진출 지원 - 취업상담 및 알선 강화, 전문 인력 활용분야개발</p>
<p>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p>	<p>①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②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③공무원 교육 실시 ④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p>
<p>추진체계 구축</p>	<p>①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②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③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양성 ④법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증양,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p>

	정책 세부 내용 요약	주관부서	협력부처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구축	국제결혼당사자보호, 언어문화이해교육,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전달체계(결혼이민자 지원센터)구축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부, 복지부, 정통부, 행자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감독, 생계·의료지원 및 생활정보제공	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지자체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방지, 체류자격 불안정해소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지원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지자체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노동부	여가부
	불법행위단속	경찰청	법무부
	업무관계자 교육	중앙인사위	전 부처, 지자체

결혼이주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제결혼 과정에서부터 혼인 이후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정 폭력에 대한 지원,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지원,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생활지원,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추진체계가 구성되었다. 특히 이 정책안은 내국민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혼이민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국적 취득 전이라도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과 긴급복지지원의 수혜대상자,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직접 서비스 전달체계인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전국적 망 구축,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지금까지의 결혼이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들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혼인 해소 후의 여성들과 국적취득 전에 아이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여성, 우리나라에서 영주자격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화교와 같은 외국인 국적자를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 안이 이주민을 우리사회에 통합 하는 기제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제안된 사업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치료책 중심으로 구성된 점, 사업의 주관부서와 협력체제로 각 사업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료화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그 간의 결혼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체계를 그대로 두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어느 정도나 발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 등은 여전히 의문스럽다.

V.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의 국제결혼 이주민 지원 사업

정부의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에 따라 2007년에 충청남도가 도내의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을 위하여 실행한 사업들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충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및 국제결혼 여성가족화합 축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결혼이민자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 교육,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무료진료 등의 사업들에 약 1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각 사업을 주관한 부서들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로부터 도의 새마을과, 경제정책과, 보건위생과, 농촌개발과 등으로 소관 부서가 여러 곳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진행한 사업들의 내용들도 교육이나 문화행사, 보육료지원 등으로 대체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업의 진행은 크게 도가 직접 수행한 사업, 도내 16개 시·군에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한 사업, 도내의 민간기관의 사업에 지원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업의 실행이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사업 내용은 큰 차별 없이 다소 중복적임을 알 수 있다.

<표 7> 2007년 충청남도 이주민 사업 총괄

사업내용	주관부서*	대상	예산액 (천원)	비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무료진료사업	보건위생		155,000	기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복지정책	자치단체	104,250	국고
국제결혼가정 한마당 축제	복지정책	민간단체	30,00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복지정책	자치단체	199,800	
결혼이민여성지원사업	여성가족정책	민간단체	30,000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여성가족정책	자치단체	388,80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지원	기술보급	자치단체	9,000	
외국인근로자화합한마당지원(한가위)	경제정책	민간단체	10,000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	경제정책	자치단체	10,000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농업정책	자치단체	208,250	국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구입	여성가족정책	도운영	10,000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가족정책	자치단체	134,000	기금
외국인 화합한마당축제지원	도의새마을	민간단체	50,000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지원	도의새마을	자치단체	40,000	
합 계			1,379,100	

도내의 16개 시·군이 2007년에 이주민들을 위하여 수행한 사업들과 예산은 <표 8>과 같았다. 국제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은 5억 6천만 원이라는 최고로 많은 예산을 사용한 당진군에서부터 3천 2백만 원의 가장 적은 예산을 집행한 계룡시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한 사업의 내용은 지자체간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국제결혼이주민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국제결혼 가정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지원,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축제, 국제결혼 가정의 행복가꾸기사업, 국제결혼여성 및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한국전통문화 체험 등의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었고, 지자체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국제결혼여성들을 친정에 보내주는 프로그램(논산시, 계룡시, 홍성군), 국제결혼지원금(보령시,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 국제결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의 사업들이 있었다.

<표 8> 충청남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 이주민 사업 총괄

시군구	사업내용	소관행정부서	대상	예산(천원)				비고
				총액	국고부담	도부담	시/군부담	
천안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행사지원 및 도 행사참석	여성복지		7,200	.	2,160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국어교육)	여성복지	민간단체	70,000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복지	민간단체	70,000	.	21,000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외국인여성 적응프로그램)	여성복지	민간단체	14,553	35,000	17,500 4,366	.	
	국제결혼가정 자녀지원	여성복지	민간단체	2,300	.	.	.	
	결혼이민가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보육복지	민간단체	140,400	.	1,150	.	
	외국인근로자위탁운영	지역경제	민간단체	10,000	.	23,040	.	
	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역경제	지자체운영	1,400	.	5,000	.	
	외국인근로자위탁운영	지역경제	민간위탁운영	180,000	.	.	.	
	합계			495,853	.	.	.	
공주시	국제결혼가정자녀학업자료지원	여성정책	사회복지	21,500	.	6,450	141,050	
	국제결혼가정지원	여성정책	지자체운영	50,000	.	1,500	3,500	
	결혼이민가가정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여성정책	민간단체	140,000	.	28,080	112,32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정책	민간단체	24,319	.	7,296	17,023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보급	여성정책	민간단체	24,318	.	7,295	17,023	
	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여성정책	민간위탁	43,438	34,750	.	8,688	
	온누리안 쉼터운영(국제결혼가정)	여성정책	민간단체	10,000	.	.	.	

공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정책	민간단체	44,800	44,800	.	.	(기금)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정책	민간단체	67,200	.	.	.	
	합계			425,575	.	.	.	
보령시	국제결혼가정꾸미기 참여자 보상	사회복지	행사실비보상	7,169	.	2,151	5,018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무상보육료	사회복지	민간단체	55,800	.	11,160	44,64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사회복지	민간단체	7,168	.	2,150	5,018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농정관리	기타보상금	66,000	46,200	5,940	13,86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지원	농업기술	국외여버	2,000	.	600	1,40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보상	농업기술	행사실비보상	4,000	.	1,200	2,800	
	국제결혼지원금	사회복지	사회복지착수혜	50,000	.	.	.	
	국제결혼행복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민간단체	3,169	.	951	2,218	
	외국인적응능력 프로그램지원	주민생활지원	민간단체	4,000	.	2,000	2,000	
합계			199,306	.	.	.		
아산시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보육관리		82,800	.	16,560	66,24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정책		27,737	.	14,837	12,90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우리문화보급사업)	여성정책		3,000	.	900	2,100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여성정책		44,876	34,750	1,430	8,687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정책		21,444	.	6,433	15,011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재료)	기술지원		4,000	.	1,200	2,8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운영	고용증진		10,000	.	5,000	5,000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여성정책		44,800	.	.	.	(기금)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여성정책		7,000	.	3,500	3,500	
합계			245,657	.	.	.		
서산시	외국인여성 어울림마당	새마을	민간단체	1,000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참가자보상금	가정복지	행사실비보상	5,435	.	1,631	3,804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가정복지	민간단체	47,480	.	14,244	33,236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농업관리	기타보상금	66,000	46,200	5,940	13,860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농업관리	민간위탁	8,375	5,682	.	2,513	
	합계			128,290	.	.	.	
논산시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복지	민간단체	147,600	.	29,520	118,080	
	국제결혼 이민여성 친정나들이	여성복지	행사실비보상	10,000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복지	민간단체	62,472	.	18,741	43,731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교육도우미)	농정기획	기타보상금	66,000	46,200	5,940	13,860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지원	새마을지원(민간위탁)	민간단체	4,000	.	2,000	2,000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부부교실등)	농정기획	민간위탁	8,375	5,862	.	2,513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보건위생	의료및구입비	9,400	.	.	.	
	합계			307,847	.	.	.	

계룡시	국제결혼가정교육 실비참석수당	가정복지	행사실비보상	2,000	·	600	1,40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가정복지	민간단체	10,993	·	3,298	7,695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가정복지	민간단체	5,400	·	1,080	4,320
	외국인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가정복지	민간단체	4,000	·	2,000	2,000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가정복지	민간단체	10,000	·	·	·
	합계			·	·	·	·
금산군	국제결혼가정 관련참가촉제	여성복지관리	행사실비보상	5,000	·	1,500	3,500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43,410	34,728	·	8,682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57,983	·	17,395	40,588
	외국인주부 우리문화익히기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15,000	·	·	·
	외국인주부 자녀 버림목되어주기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30,000	·	·	·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청소년복지	민간단체	205,200	·	41,040	164,160
합계			·	·	·	·	
연기군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가족보건관리	의료및 구입	3,000	·	·	·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유아복지	민간단체	70,200	·	14,040	56,160
	국제결혼지원금	부녀복지	기타보상금	60,000	·	·	·
	국제결혼가정학업자료지원	부녀복지	사회보장적수혜	10,000	·	1,800	8,200
	국제결혼가정행복가꾸기 사업	부녀복지	민간단체	26,796	·	8,038	18,758
	혼인귀화여성농업인 교육강사수당	농촌지도개발	일반운영	1,000	·	300	700
	혼인귀화여성농업 교육교재	농촌지도개발	일반운영	3,000	·	900	2,100
	혼인귀화여성농업인 교육참가보상	농촌지도개발	행사실비보상	2,000	·	600	1,400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지원	지역경제관리	민간단체	5,000	·	·	·
합계			180,996	·	·	·	
부여군	여성결혼이민자 보건역사 향상사업 (건강교실운영)	예방보건	일반운영	800	·	·	·
	여성결혼이민자 우리고장둘러보기(급량비, 입장료등)	모자보건	행사실비	642	·	·	·
	여성결혼이민자 전통음식체험하기(음식재료구입)	모자보건	행사실비	900	·	·	·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교실운영 간식비	모자보건	행사실비	336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아동	사회보장적수혜	59,301	·	17,790	41,511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보육료지원	여성아동	민간단체	122,720	·	36,360	86,360
	미혼자국제결혼 지원금	주민새마을	기타보상	48,000	·	·	·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 교재제작	주민새마을	일반운영	4,000	·	2,000	2,000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농정기획	사회보장적수혜	66,000	46,200	5,940	13,860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도우미수당(목변경)	농정기획	기타보상	66,000	46,200	19,800	·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부부교실등)	농정기획	민간위탁	8,375	5,863	2,512	·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여성아동	민간단체	72,720	·	36,360	36,360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의약방역	의료 및 구입	180	·	45	135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목변경)	여성아동		12,000	·	6,000	6,000

부여군	국제결혼가정자녀학업자료지원	여성아동	사회보장적수혜	6,251	.	1,916	1,916	
	국제결혼가정 행복한가정가꾸기사업참가등록비	여성아동	행사실비보상	5,000	.	5,000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아동	민간행사프로그램	21,437	.	6,000	9,437	
	합계			
서천군	국제결혼가정행상 및 교육참가보상	여성아동복지	행사실비보상	1,996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아동복지	민간단체	30,337	.	9,101	21,236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보육료지원	여성아동복지	민간단체	72,200	.	14,400	57,600	
	혼인귀화여성농업인 교육강사수당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700	.	210	49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자료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2,000	.	600	1,40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자료재료비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	재료준비	1,200	.	360	84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참석자급식비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	행사실비보상	600	.	180	420	
	혼인귀화여성농업인 한국선통문화체험활동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	민간단체	1,500	.	450	1,050	
합계				
청양군	농촌총각국제결혼추진비	여성복지	국외여비	2,000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복지	민간위탁금	20,783	.	6,235	14,548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습자료 지원	여성복지	사회보장적수혜	17,400	.	.	.	
	농촌총각 국제결혼주선	여성복지	민간행사보조	25,000	.	.	.	
	합계			65,183	.	.	.	
홍성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도우미 수당	농정기획관리	기타보상	66,000	46,200	5,940	13,86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복지	민간단체	41,287	.	12,386	28,901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주기	여성복지	민간단체	10,000	.	.	.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보육료지원	아동복지	민간단체	147,600	.	.	.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도의 새마을	민간단체	4,000	.	2,000	2,000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행정혁신(자치행정)		1,500	.	.	.	
	합계			270,387	.	.	.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행복한가정가꾸기사업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26,110	.	7,833	18,277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무상보육료지원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95,400	.	19,080	76,320	
	여성결혼이민자모임 교육강사로	보건관리	운영수당	400	100	100	.	200기금
	여성결혼이민자모임 도우미 강사로	보건관리	운영수당	1,120	.	280	280	560기금
	여성결혼이민자건강검진	보건관리	민간위탁	5,366	.	1,341	1,342	2,683기금
	합계			
태안군	국제결혼한마당축제	가정복지	행사운영비	1,000	.	300	700	
	국제결혼한마당축제	가정복지	행사실비보상	7,000	.	2,100	4,900	
	국제결혼가정 행복한가정꾸미기	가정복지	민간단체	6,000	.	1,800	4,200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보급	가정복지	민간단체	3,500	.	1,050	2,471	
	국제결혼가정 자녀학습지원	가정복지	민간단체	3,484	.	1,045	2,439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여성복지	민간단체	93,600	.	18,720	74,880	

태안군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지원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4,000	·	2,000	2,000
	합계			118,584	·	·	·
당진군	외국인 우리문화체험행사	기획관리	민간행사보조	8,000	·	·	·
	필리핀 여성 이용 초등학교 영어교육	기획관리	민간행사보조	144,000	·	·	·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보육료지원	여성정책	민간단체	189,000	·	37,800	151,200
	국제결혼가정 행복한 가정 꾸미기 사업	여성정책	민간행사보조	65,047	·	19,514	45,533
	결혼이민자 교육도우미 수당	농정관리	민간단체	66,000	46,200	5,940	13,860
	혼인귀화여성 농업인교육지원	지도개발(농촌진흥)	민간단체	6,000	·	1,800	4,200
	결혼이민자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문화관광)	민간단체	30,000	·	·	·
	여성결혼이민자녀 방문학습자료지원 (과목경정중)	여성정책	사회보장적수혜	17,178	·	5,153	12,025
	여성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과목경정중)	여성정책	민간단체	33,000	·	9,900	23,100
	결혼이민자부부교실위탁	농정관리	민간단체	8,375	·	5,863	2,512
	합계			566,600	·	·	·

* : 예산서의 세항을 근거로

자료 : 각 지자체별 2007년 세출예산(본예산, 추경예산) 재구성

사업의 추진 행정기관도 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업무를 맡은 부서, 지역경제발전 및 농정관리를 맡은 부서, 주민생활지원국 등으로 다양한 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의 실제 진행은 대부분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거나 민간위탁의 형태로 이루어 졌다.

상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나 16개 시·군이 각 행정기관별로 경쟁적으로 이주민 사업에 참여하고 현상은 예전에 비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주민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 들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방안에 의해 충남도와 16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사업들이 지역적인 차별성이 없이,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축제 등의 사업 들이다. 비록 사업의 진행을 충남도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하 거나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은 변 화가 없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지방의 사업들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나 이해 없이 중복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주민들의 복지욕구나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주민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처한 환경이 다르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여건이 다르므로 지자체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고, 지역사회의 여건분석 등을 통하여 이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야만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을 제외하고는 1회의 선심성 행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16개 시·군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결혼이주민가족의 행복가꾸기 사업'은 예산서에 '1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회의 행사 진행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모적인 형태의 사업 수행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주민들을 지역사회로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이들이 생활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관이나 행정부서의 실적은 될 수 있지만 예산의 낭비인 것이다.

셋째, 정부의 통합 안에는 이주민과 관련하는 공무원이나 교육자, 사업주 그리고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교육의 추진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도와 16개 시·군이 수행한 사업들에서는 여성 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학습교육만 있을 뿐, 그들의 가족이나 사업주, 관계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이민자 관련 사업과 관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교육은 전무하다.

넷째, 사업의 대상이 정주를 목적으로 이주한 '이주 여성'에게로만 국한되어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이주민인 화교나 외국인근로자 등이 배제되고 있다. 천안시나 아산시와 같이 산업단지들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결혼이주민보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숫자가 더 많고 이들의 정주 비율이 높다. 이대로 간다면 안산시처럼 이주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예컨대 외국의 코리아타운이나 차이나타운처럼 외국인집단 거주지역이 발생하여 계토화할 가능성이 높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나 대책은 전무하다.

Ⅵ. 결론 : 충남지역 이주민사업을 위한 개선과제

21세기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도 북아프리카·중동에서 유럽으로, 중남미·카리브해에서 미국으로, 동남아에서 북부지역으로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다인종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취업, 결혼, 학업 등으로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본 글은 이주의 세계화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의 실태와 이들이 한국사회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지원노력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보았다.

최근 한 2년간 중앙정부가 이주민들을 한국사회로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한국어 교육,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 보육료지원, 문화체험 및 축제, 사회보장성의 경제적 지원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빈곤 등의 문제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특히 배타적 단일민족 신화 등으로 이전까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전무하였던 우리로서는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지역적 차별성이 없는 점, 1회성의 휘발성의 사업, 인식교육의 부재, 사업대상에 있어 자녀가 있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문제 해결방안의 기초 단위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은 여전히 이주민들을 지역사회로 통합하는데 장애가 되는 점이다.

이에 향후 충남도가 상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결혼 이주민의 복지증대와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의 다양한 이주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여성결혼이민자, 국제결혼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욕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보육 및 양육 환경, 자녀학습 수준 등에 대한 연구 조사와 이들 출신 국가별 특성,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이 중복성과 일회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NGO,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외국인근

로자센터, 다문화 교육기관, 상담소 등과 연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재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NGO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위계적 형태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력과 연대가 추진되어야 하고, NGO들 간에도 개별적인 사업전개로 인한 활동의 중복이나 서비스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자간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역 내 이주민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각 기관·단체의 특성화된 영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서비스가 상호간에 조정·연계되어 비용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다문화 교육의 내용 및 대상층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민과 관련한 논의와 지원정책에서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레토릭은 '다문화 주의' 혹은 '다문화적 상호이해'이고, 이런 사회의 건설은 법과 제도상으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의 마련뿐만이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남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된 교육의 내용은 이주민을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었었고, 그 대상도 이주민가 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대부분이다. 다문화 공생사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를 내국인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이 이주민 관련하는 사업주, 공무원, 민간단체 등의 실무자들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주민을 위한 정책들의 실행 효과를 담보 할 수 있다. 비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바로 성과를 낳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다인종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다름이 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특성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국제결혼 이주민에 대한 사업 대상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주 노동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경우에는 한국사회가 가진 부계혈통의 전통 때문에 이들이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면서 갖는 문제점들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경우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안 모색이 이주민사업의 큰 틀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근로를 목적으로 한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도 국내 노동력의 대체로서가 아니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을 이들의 거주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거주 기간이 짧은 시기에는 한국에 적응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들이 필요하므로, 한글교실, 요리교실, 한국전통 교육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오랫동안 거주한 이들에게는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국사회와 다른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다문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100만 명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이주민들을 '도와주어야 할 노동자'나 '한국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 혹은 '국제결혼을 하였지만 적응이 힘든 이주여성'의 범주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생활인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호'와 '도움'이라는 것은 이들과 우리 사이를 여전히 중간 지대 없이 둘로 갈라놓고 이주민을 타자로 배제하는 분리적 사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민을 도움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이웃'으로 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의 정책들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제4권 2호, 1999, pp.61-80.
- 김종철, "충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현황 및 지원대책," 「아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현황과 정책 간담회」자료, 2006.
-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2006.
-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2005.
- 이금연,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대전포럼(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2003.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충남여성개발원, 2003.
이주·여성인권연대 「국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와 대책」, 2001.
- 위훈(안양전진상 복지관 이주여성센터 위훈),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2003년 6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2003.
- 전정애·표갑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지원대책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1집, 2007, p.96정기선 외.
-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 정은희,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제13권 제3호, 2004, pp33-5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숍」, 2003.
- 한국염,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원원전략은 가능한가?"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정책 "다시보기"」자료집, 2006.